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보도	2017. 6. 12.(월) 조간	배포 2017. 6. 9.(금)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김상록 팀장(3145-8129), 김 흠 선임(3145-8155)	

**제 목 :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(Email-phishing)에 주의 !**  
[「3유·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」 이행과제]

■ 소비자경보 2017-4호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## 1 내 용

□ 최근 「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」 (☎1332)\*에 금감원을 사칭한 “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”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\*

\* '17.5.31.~6.7. 기간중 19건의 상담·신고 접수

○ ‘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’는 거짓 내용

\* 금감원내 유관부서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다수 접수

☞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, 파밍 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**Email-phishing**에 주의를 당부할 필요

### < 이메일 내용 요지 >

(발신자) “금융감독원” (OOO@daum.net)

(내용) 2017년 5월 29일 현재 **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** 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송금 사유 입증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. (중략) 자세한 사항은 메일에 첨부해드린 [환전\_해외송금\_한도\_및\_제출서류]를 참고하세요.

(첨부)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.hwp

## 2 유의사항

- ① **(사전 확인)**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
  -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(웹주소 링크 포함)\* 실행을 유도하여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례도 다수
    - \* 악성코드는 실행파일(\*.exe) 이외에 모든 파일(\*.hwp, \*.xls, \*.zip 등)을 통해 유입 가능
  - ※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 등 발생
  -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하여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우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
  - ※ 최근에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우편으로 검찰 출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레터피싱(Letter-phishing) 사례\*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
    - \* 취업희망자를 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(16.3.2. 보도) 등
- ② **(메일 삭제)**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,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,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 삭제
- ③ **(신고)** 각종 사건조사,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수신한 경우 금융감독원 「**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**」에 신고 (국번없이 ☎1332)
  - 특히, 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([www.boho.or.kr](http://www.boho.or.kr)) 또는 118상담센터 (국번없이 ☎118 또는 110)로 즉시 신고

(붙임)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 1부

(붙임) [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 ]

보낸사람: '금융감독원' <@daum.net>  
날짜: 2017. 6. 2, 오전 11:26  
제목: [금융감독원]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  
받는사람: <  
참조:



2017년 5월 29일 현재 귀하의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송금 사유 입증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.

개인송금(수출입 기업, 법인은 별도)은 연간 미화 5만불까지는 서류미제출하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. 그 이상 보내시려면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

외국인의 경우 그 이상 보내시려면 소득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
서류 준비 기한은 2017.6.9 까지입니다.

서류는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)으로 금융감독원 해외송금 조사부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메일에 첨부해드린 [환전\_해외송금\_한도\_및\_제출서류]를 참고하세요.

금융감독원